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매출액을 고려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 설정〉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이용자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으로 구체화하며,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의 하한을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u>필요한</u>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 ----- ----- ----- ----- -----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u>필요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	③ -----

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④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특히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¹⁾.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²⁾.

○ 법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을 ① 전년도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이고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하고 있고,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보험 최저가입금액(또는 공제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³⁾]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매출액등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주)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 또한 2025년 말 기준 각 최저가입금액 산정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최저가입금액 기준별 계약 현황]

(단위: 건)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계약건수 (최저금액 수준)	계약건수 (최저금액 초과)	총 계약건수
정보주체 수	매출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99	171	770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322	69	391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61	17	78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86	132	718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325	223	1,548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317	90	407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304	77	381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536	271	1,807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790	193	983
1만명 미만이거나 10억원 이하인 경우 등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1,661	-	1,661
합 계			7,501	1,243	8,744

(자료: 손해보험협회, 2025. 12. 31. 기준)

□ 현행법령상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매출액등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보험 최저가입금액이 10억원인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해당 가입금액의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⁴⁾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 예컨대 2025년 11월 확인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수는 약 3,370만명 규모에 달하는데, 인당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총 배상금액은 3.37조원에 이릅니다.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최저가입금액의 하한을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로 정함으로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임.

□ 다만, 손해배상책임 이행기준의 하한 설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1천분의 1 이상의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할 경우, 현행에 비해 오히려 최저 보험 가입금액이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예컨대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900억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현행법령상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최저가입금액이 9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시행령 규정내용에 따라서는 현행(10억원)보다 낮은 보험 가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 규모(금액)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 즉 정보주체의 수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는데, 법률에서 정보주체의 수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의 하한

을 설정하는 것이 실제 피해보상의 실효성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은 법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나, 손해배상 책임 이행 금액의 최저를 전체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출액이 기준시점 등에 따라 변동되어 확정이 곤란한 점, 현 시행령상의 최저보험가입 금액대비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